



제 429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 수행으로 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1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12.
3. 회부연월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illegible]

현행	개정안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u>따른 아동학대범죄</u>	2. ----- ----- ----- -----<u>따른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u>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¹⁾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개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 예방, 진압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이 예방, 진압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3)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²⁾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가 신설될 당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내용³⁾으로 의결되었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 참고로, 김종양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1) 제11조의5는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확장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의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전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332)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용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경우 경찰권 남용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의견이 제기되어⁴⁾ 현행 법률과 같이 면책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범죄로만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됨.

참고로,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스토킹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 이유는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와 지속성·반복성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은 스토킹범죄와 다르지 않아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스토킹범죄만을 형 감면 대상 범죄로 규정할 경우,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문 의 처

02) 6788-5345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됐던 여러 위원님 지적이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는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면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행사를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폭력이 수반되는,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그런 범죄로만 축소를 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라고 발언함[제21대국회 제392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2022. 1. 10.) 회의록 58면].